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민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539 발의연월일: 2024. 12. 16.

발 의 자: 박민규·강준현·조인철

황정아ㆍ허 영ㆍ한민수

이정헌 · 정태호 · 진선미

김한규 · 이용우 · 유동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제2호 삭제).

법률 제 호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6조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36조(결격사유)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	
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	
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	<u><삭 제></u>
아니한 사람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